

# 군산역세권A3(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4.29.]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속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4.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서류접수일)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레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 현 상태대로 계약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옥로 69 영구임대주택 277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현재 공가 호수	금회 모집 예비자				
26A	189	26.62	12.5093	2.0652	10.7577	51.9522	29	70	301,	벽식구조, 개별난방	'22.08
26B	88						37	80			

•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군산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 내부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26B(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신청자격]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자세한 사항은 [4-2.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및 [12.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원인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 임대조건

공급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6A	「가」군	2,516,000	125,800	2,390,200	50,050	(+) 3,000,000 (-) 1,000,000	5,516,000 1,156,000	33,600 51,510
	「나」군	15,082,000	754,100	14,327,900	127,000	(+) 14,000,000 (-) 10,000,000	29,082,000 5,082,000	53,310 152,470
26B (주거 약자용)	「가」군	2,516,000	125,800	2,390,200	50,050	(+) 3,000,000 (-) 1,000,000	5,516,000 1,156,000	33,600 51,510
	「나」군	15,082,000	754,100	14,327,900	127,000	(+) 14,000,000 (-) 10,000,000	29,082,000 5,082,000	53,310 152,47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3.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점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b>■ 세대구성원의 범위</b>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li>• 신청자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의 직계존속</li> <li>•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li> <li>•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b>■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b>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li> <li>■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li> <li>■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b>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b>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b>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b>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자산	<b>3. 유의사항</b>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b>1. 자산기준 적용 신분</b>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b>2. 총자산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b>3. 자동차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b>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b>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60%	245,000,000	45,420,000
		1인	7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50%	245,000,000	45,420,000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80%	245,000,000	45,420,000
		1인	9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70%	245,000,000	45,420,000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110%	245,000,000	45,420,000
		1인	12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100%	245,000,000	45,420,000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출생자녀1명을 포함한 총가구원수가 3명인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최종 시세가액</li> <li>-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예수금: 잔액</li> <li>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4-1.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일반공급	1순위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p>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li> <li>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li> <li>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li> <li>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li> <li>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li> <li>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li> </ol> <p>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p> <p>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p>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p> <p>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p> <p>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p> <p>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p>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2순위	<p>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p>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군산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접수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13 (유형 2가지)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재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4-2.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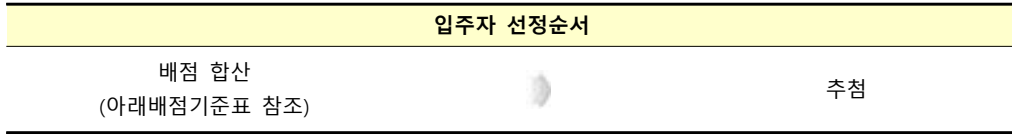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 대상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일반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차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 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26B)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3. 군산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군산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군산시에 신청접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계약체결 안내
'26.05.11(월) 10:00 ~ '26.10.30(금)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군산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통보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및 장소 안내)

-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자격검증 및 입주자 선정순서 결정은 월단위(1일~말일 신청 건)으로 진행되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턴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접수일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구 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군산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b>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b>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b>세대구성원</b>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b>(동의방법)</b>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화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b>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b>	1통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확인서	•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b>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b>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b>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신청접수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신청접수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해 당 자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b>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태아(자녀) 혹은 입양자녀가 있어 자격검증 시 출생자녀*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생자녀 :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b>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고업제후유증환자	고업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 후 수령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계약체결 안내(동호배정, 계약체결일, 장소) 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 없이 전산 추적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공사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계약체결 안내(동호배정, 계약체결일, 장소)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li> <li>•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b>사진 및 주민등록번호</b>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배우자</b>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 <b>배우자 외 대리인</b>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장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li> </ul>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휴한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b>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b>됩니다.</li>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li> </ul>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청접수는</b> 지정된 기간에 <b>군산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b>합니다.</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접수일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li>•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기준액"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군산역이 위치하고 지구 북측으로 내흥초등학교/금강하구둑, 동측으로 군산IC, 남측으로 군산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개발·실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변기반시설 등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사항, 현지어건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 조정 될 수 있습니다.</li> <li>•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li> <li>• 본 단지는 군산역과 장항선철도에 인접하여 열차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인근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로</li> </ul>

구분	유의사항
	<p>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 북측으로 공동주택지가 15M 도로, 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지가 15M도로, 남측으로 공공청사지가 12M 도로, 서측으로 근린공원이 26M도로에 면하게 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과정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노선 및 정류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부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26A, 26B형 277세대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되며, 드레인 배관이 노출형으로 시공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거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li> <li>• 306동 주변에 가스정압기가 설치예정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남측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B1BL 인근)은 교육청 일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명칭이 설치 전까지 유사용어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경계부에 생울타리 담장 또는 헨스가 설치(출입구 제외)되며 이로 인해 단지출입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li> <li>• 세대간 경계벽(거실, 주방/식당벽)은 인접 세대간 소음전달 저감을 위해 콘센트가 노출형으로 시공됩니다.</li> <li>• 단지내 이동통신 중계기는 302동, 305동, 306동 옥상에 설치되며(이동통신 배관공사 완료) 향후 민원 및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위치변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li> <li>•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바닥결로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li> <li>•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도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 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li> <li>•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각동 전면·주변(필로티)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li> </ul>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사회복지관, 실내놀이터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항공기 등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새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01,302동)</li>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 출입구 높이는 3.0m 입니다.</li> <li>• 주차대수는 지상 427대, 지하 508대를 포함하여 총 935대입니다.</li> <li>•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되어 있습니다.</li> <li>•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li> </ul>

구분	유의사항
	<p>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고,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세대 내 발코니는 소형세탁기(9kg)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각 타입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입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설치 시 입주자 부담이며 26A, 26B형은 벽걸이에어컨 기본설치 품목)</li> </ul> <p>■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9.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주택성능등급(★로 해당 등급 표시)

#####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전용부분	★
수리용이성공용부분	★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3) 환경관련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름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접근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호너비	★★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단열조치 준수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월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	적용	-	-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및 공종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군산신역세권 A-3BL 건축/기술/토목/조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주)	-	-
		코오롱글로벌(주)		-
		신동아건설(주)		-
군산신역세권 A-3BL 전기	전북지역본부 (418-82-06818)	대보건설(주)	-	-
		디엘건설(주)		(주)지화기술단/ (주)지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심포니		
군산신역세권 A-3BL 통신		(유)미주계전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접수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청각 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욕실 (1개소에 한함)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중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반복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혹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제청중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복지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 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지방세정 자료

자산	자동차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총자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문의처	. 군산시청 및 군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리플렛 배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LH 전북지역본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9.

군산시



[영구임대(일반용) 주택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일반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군산신역세권A3(내흥3)	전용면적	26A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input type="checkbox"/> 일본군위안부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b>군산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b>						

[영구임대(일반용)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여기서부터 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특징		
구 분	배점	확인내용	특점	배점기준
1. 군산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접수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군산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b>군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b>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신청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인~2인	24		▶ 신청접수일 현재의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접수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 (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유형 3가지 해당	15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유형 2가지 해당	13		
	유형 1가지 해당	11		
	기타	7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무주택서약서 □기타증빙서류			

[영구임대(주거약자용) 주택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군산신역세권A3(내흥3)		전용면적	26B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집전화( ) -					
주거약자용 <input type="checkbox"/> ( 순위) <input type="checkbox"/>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된 주택에 신청함.						
신청 순위	일반공급	1순위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내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input type="checkbox"/>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4순위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주택 및 자산 현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b>군산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b>						

※여기서부터 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 이상			▶ 신청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70세 미만				
2. 세대구성원수(신청자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점)	1			▶ 신청접수일 현재의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접수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3. 군산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 신청접수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군산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b>군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b>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 (3점)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총점		점	_____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원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서약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증빙서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재임대공급)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p>본인(배우자 포함)은 <b>군산신역세권A3(내흥3) 영구임대주택</b>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b>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영구·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b>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p> <p>※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p>		
2026 년                      월                      일		
확인자 (임차인)	(서명 또는 인)	
<b>군산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지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b>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b>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지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b>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b>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지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 . .

군산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만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만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